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28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 : 인재근·소병훈·송갑석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강선우 · 양이원영 · 고영인

문진석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이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어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
지) ①・② (생 략)	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	③
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	
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
	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u>된 경우</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